#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4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한민수ㆍ이연희ㆍ서영교

정일영 · 임오경 · 송옥주

박균택・박상혁・황정아

박성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를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10條(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   |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
| 關과 認可節次) ① ~ ④ (생   | <u>인가의 취소 등)</u> ① ~ ④ |
| 략)                  |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                     |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
|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       |
|                     | 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
|                     | 알려야 한다.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         |
|                     | <u>된 경우</u>            |
|                     | 2.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⑤ 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기    | ⑥ 그 밖에 인가 및 인가의 취      |
| 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 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 <u>로 정한다.</u>       | <u>으로 정한다.</u>         |